한국작물보호협회

(우)0674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76 대양빌딩 5층(☎:02-3474-1590~4)/FAX:02-3472-4134/기술시험부

문서번호 기술시험-11

시행일자 2025. 2. 12

수 신각회원

참 조

제 목 : 제조·수입업자가 특정판매업자에게 특별관리대상농약 공급시 유의사항 안내

- 1.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농자재산업과-920호 (2025.2.3.)와 관련됩니다.
- 2. 농촌진흥청에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개정고시가 2025. 1. 16.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조·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특정판매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
- 3. 아울러 특정판매업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결과 등을 농촌 진흥청(농자재산업과), 농림축산검역본부(식물방제과),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(농업정보자재과), 판매업을 등록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특별관리대상농약을 특정판매업자에게 공급시 주의사항
 - 공급하려는 검역용 훈증제 특성에 맞는 주의사항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
 -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농약의 수송, 보관, 판매시 주의사항

- 나. 특정 판매업자 지정 및 변경 등(해당사실 발생 후 10일 이내 제출)
 - 최초 지정하거나 지정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(지정 취소 포함) 제출 내용
 - 판매업자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
 - 판매업자 사업자 및 보관창고 소재지
 - 판매하려는 특별관리대상 농약의 품목명 및 상표명
 - 제출기관 : 농촌진흥청(농자재산업과), 농림축산검역본부(식물방제과)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업정보자재과), 판매업을 등록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

첨 부 : 농촌진흥청 공문사본 1부. "끝

한국작물보호협호

